
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

2023. 4.



보건복지부

1. 추진 배경

-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(약 12%)*는 부모 사망·장기간 소재불명·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

* '22년 조사 시 보호대상아동 20,505명 중 2,462명이 법정대리인 부재

-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 입·퇴원·수술, 금융계좌 개설, 입학·전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으나, 후견인 선임·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

2. 현황 및 문제점

1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 미활성화

-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권자(그 외 검사, 아동 본인, 이해관계인 등) 중 하나이나, 실제 신청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- 현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(시설장, 위탁부모)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, 양육자는 서류준비 등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

2 유기아동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 입양 등 보호조치 지연 발생

- 친권자를 알 수 없는 유기아동의 경우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입양 곤란
- 발견된 유기아동을 우선 양육시설에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후 보호조치 변경 없이 시설에서 장기 양육되는 경향

* "두 번 버려진 생후 7개월 건우, 후견인 없어 입양 대신 다시 시설로" (동아일보, '22.3.4.)

3 양육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권한과 책임에 부담

- 친권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 양육자가 실제로 필요한 권한*에 비해 부담이 큰 상황

* 의료서비스 이용, 금융계좌 개설, 핸드폰 개통, 학적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대리권

※ (해외사례) 독일·영국·일본 등 선진국은 후견인 선임 없이도 위탁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법정대리권 부여

④ 전문성 있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지원 부재

- 부모의 빚 상속, 정신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여 양육자가 후견인이 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원 및 연계체계 부재
- 치매 노인,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양성·지원 중이나, 보호대상아동은 아직 공공후견인 지원제도 미도입

⑤ 후견인 선임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·감독 체계 미흡

- 후견인의 권한 행사 및 활동*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거나 비용 ((예)아동 면담 시 교통비 등)이 발생하나, 이에 대한 지원 부재

* 법원에 후견인 취임신고 및 후견사무 보고, 각종 권한 행사 등

- 후견인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 분담을 위해 법원이 '미성년후견감독인'을 선임할 수 있으나, 선임이 법원 재량이어서 활성화 미흡

* '21년 미성년후견 인용 사건 877건 중 441건(약 50%)만 후견감독인 선임 ('22. 사법연감)

3. 추진방향 및 과제

① 시·군·구청장의 후견인 선임 신청 활성화 추진

- 시·군·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인 선임에 관한 구체적 신청 절차 마련 (아동복지법 개정 추진)
 - 양육상황점검(분기별 1회)을 통해 후견 필요 아동을 발굴하고, 사례 결정위원회*가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(양육자, 공공후견인 등)해 선임 신청
- * 아동의 보호조치·퇴소조치 등 아동복지·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시·군·구에 설치된 기구 (변호사·의사·경찰·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 아동 관련 현장 전문가등으로 구성)
-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을 위한 요건·절차 마련 및 시·군·구 교육 실시 (지침 제작·배포 및 교육, '23.下~)

-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 자문, 소송대리 등 재판절차 지원
 - 가정법률상담소·지방변호사회 등과 연계·협력체계 확립·운영

2 **유기아동 후견인을 관할 시·군·구청장으로 자동 지정**

- 유기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아동 발견 즉시(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) 관할(발견지) 시·군·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(아동복지법 개정 추진)

3 **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한 부여**

-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필수적 범위* 內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 부여 (아동복지법 개정 추진)

* ▲ 입·퇴원·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, ▲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, ▲ 입학, 전학 등 학적관리, ▲ 가족관계증명서 발급(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검토)에 필요한 사항

◆ **위탁부모의 권한 관련 해외 사례**

- **(독일)** 위탁부모는 후견인이 아니더라도 '작은 친권(kleines Sorgerecht)*' 행사 가능
 - * 일상적 사무 결정·대리권, 사회보장급여 청구권, 긴급대리권 등
- **(영국)**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친권이나 후견권과 무관하게 아동을 위해 합리적인 행위라면 무엇이든 가능
- **(일본)** 위탁 부모는 재판 없이도 신상에 관한 권한 일부 행사 가능

- 양육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시·군·구의 정기적 감독 실시 (분기별 양육상황점검시 병행 실시)

4 **공공후견인 제도 도입** ('23.下, 시범사업)

- 아동복지·법률 전문가 등 대상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교육 및 후보자 양성(시범사업('23.下))
- 공공후견인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발굴 시, 시·군·구에서 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 의뢰
 -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후보군에서 적절한 후보를 추천, 시·군·구청장이 보장원의 법률 지원을 받아 법원에 선임 신청

⑤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

-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에 대한 법적 자문, 보수교육 제공, 월 활동비용 지원 등 실시 (시범사업('23.下))
 - 후견인이 가입할 수 있는 피후견 아동에 대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등 후견인 지원 방안 추가 모색 (연구수행, '24.)
- 임의기관인 '후견감독인'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관할(주소지) 시·군·구청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(아동복지법 개정 추진)

4. 향후 계획

①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가족관계등록법」 개정 추진('23.~)

② 보호대상아동 후견 실태조사 및 후견 필요 아동 발굴

-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('23.上)
- 양육상황점검시 후견 필요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('23.下)

③ 공공후견제도 도입

- 연구용역 통해 공공후견인 사업 매뉴얼 개발 ('22.下 ~ '23.上)
- 후견인 후보자 모집·양성 및 시범사업 실시('23.下~)